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정책 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1) 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8조제2항)
- 2)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나. 의료기관 인증마크 변경(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립절차”를 “수립절차 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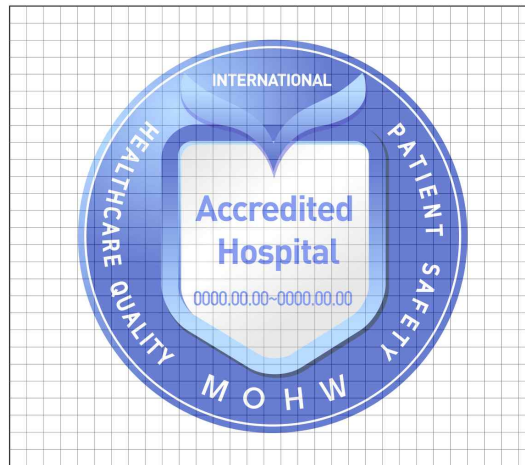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증 유치기관의 표시(제6조제1항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비 고]

1. 인증표시는 이미지의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정확하게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증표시를 재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 투사복제 방식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원고 출력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하여야 한다.
3. 인증표시의 색상은 지정된 전용색상을 기본으로 하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증표시의 재생 · 사용 · 크기 · 색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u>정책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의 <u>수립절차</u> 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 ----- ----- ----- <u>정책협</u> <u>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u> - ----- ----- <u>수립절차 등</u> ----- -----.
제9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u>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 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연 락 처	(044) 202 - 2987